



잔재물 등의 조치기준

제1편 총칙

제10장 잔재물 등의 조치기준 제83조 ~ 제85조

1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

- 가스·증기·미스트·흠 또는 분진 등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장에 대하여 근로자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가스 등의 공기 중 발산을 억제하는 설비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 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

1

발산원 밀폐설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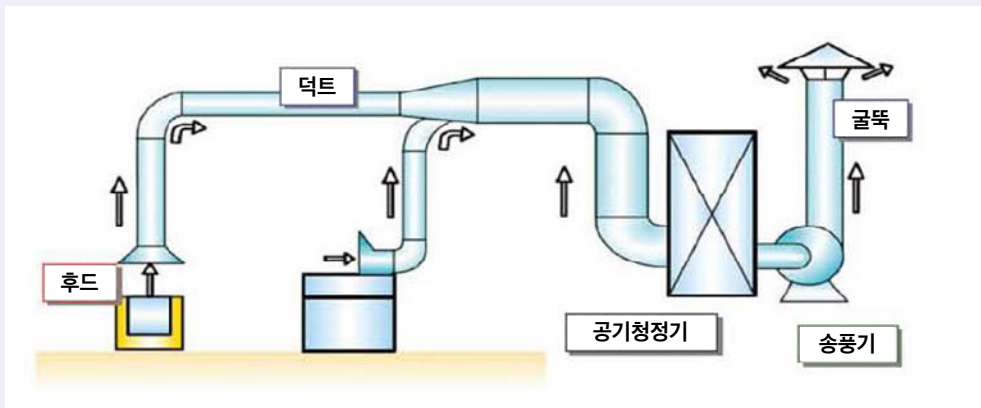
- 단위작업 장소에서 유해물질 발생원의 모든 부분이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형태로 공정 운전 중에 상시음압이 유지되고 있는 설비



2

국소배기장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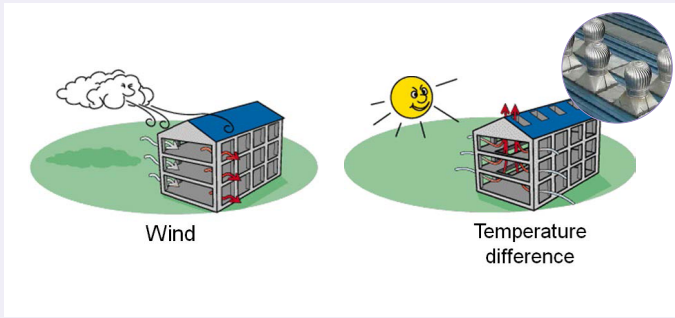
- 유해물질의 발생원 근처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를 제거하는 형태로 일반 작업환경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



3

전체환기장치

- 유해물질이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으로 도달하기 전에 오염된 공기를 교체하거나 제거하여 작업환경을 관리하는 형태로, 공간 전체를 대상으로 오염 되지 않은 공기를 불어넣어 희석시키는 방법



<자연환기>

<자연환기+강제환기>

2 공기의 부피와 환기

- 근로자가 가스 등에 노출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실내작업장은 공기의 부피와 환기를 다음 기준에 맞도록 조치



- 바닥으로부터 · 4m 이상 높이의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의 공기 부피는 근로자 10m³/명 이상이 되도록 조치



- 작업 외부를 향하는 개방가능 창을 설치, 그 면적은 바닥면적의 1/20 이상으로 함 (충분한 환기를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제외)



- 기온 섭씨 10도 이하인 상태에서 환기를 하는 경우 근로자가 1m/s 이상의 기류에 닿지 않도록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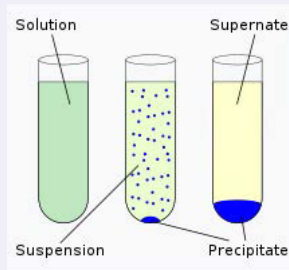
3 잔재물 등의 처리

- 인체에 해로운 기체, 액체 또는 잔재물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화·침전·여과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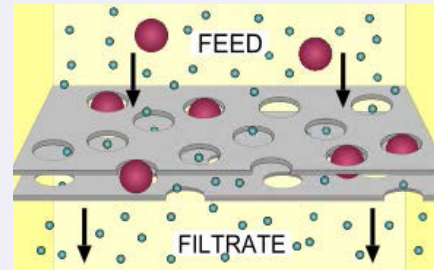
중화	서로 성질이 다른 물질이 섞여 각각 그 특징이나 작용을 잃는 것을 말하며, 흔히 산성물과 염기성물이 서로 합하여 중성이 되는 것을 말함
침전	용액 중 현탁물질이 중력작용에 의해 침강하는 것으로, 약품첨가 유무에 따라 보통(자연)침전과 약품(응집)침전이 있음
여과	액체와 고체가 혼합된 물질을 입자의 크기 차이를 이용해 분리하는 방법을 말함



<중화>



<침전>



<여과>

-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된 기체나 잔재물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 건강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독·살균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
- 인체에 해롭거나 병원체로 인한 기체나 잔재물 등을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성분, 오염인자 종류 및 유해·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위탁처리자에게 제공

